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15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12731 취득세등무효확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신○○, 김○○
피 고	○○시장
변 론 종 결	2024. 4. 30.
판 결 선 고	2024. 7. 23.

주 문

1. 피고가 2013. 8. 6.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86,233,92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7,952,87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3,641,1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15

주문 제1항[1] 및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3. 9. 4. 한 재산세 5,794,720원 부과처분, 2014. 9. 3. 한 재산세 5,715,700원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2]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등

1) 원고는 2012. 9. 27. 피고에 대하여 '2012. 8. 13. B 등 4인으로부터 ○○시 C 대 564.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3억 원에 매수하였고, 그 중 계약금은 4,000만 원, 잔금은 12억 6,000만 원이며, 잔금지급일은 2021. 9. 26.이다'는 취지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를 하였다.

2) 원고는 위 신고 전날인 2012. 9. 26. D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6억 2,5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D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었다.

3) D조합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E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3. 6. 4.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으며, 2014. 8. 13. 이 사건 토지가 F에게 매각되었는데, 원고는 위 매각일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

1) 원고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부과처분을 "2013. 8. 12. 자 97,827,970원(가산세 포함)의 취득세 부과처분"으로 기재하였다. 그 중 처분일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납부고지서 등 처분서가 증거로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바, 을 제3호증의 부과현황 화면에 "부과일자"로 표시된 "2013. 8. 6."을 처분일자로 보고, 취소대상에 관하여는,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2013. 8. 6. 원고에 대하여 부과된 취득세는 가산세 포함 86,233,920원이 부과되었고, 원고가 청구취지에 기재한 "97,827,970원"은 취득세 외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각 가산세 포함)를 합한 금액인바, 여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다투는 이 부분 부과처분은 주문 제1항과 같이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전부라 봄이 타당한바, 직권으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경정한다.

2) 원고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각 부과처분의 처분일자를 '2013. 9. 9.', '2014. 9. 11.'로 각 특정하였으나, 이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이에 관한 처분서가 증거로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바, 을 제5호증의 각 부과현황 화면에 "부과일자"로 표시된 날을 각 처분일자로 보아 직권으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경정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15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의 취득세 등 부과 등

1) 피고는 원고의 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에 따른 신고필증을 확인하고 2013. 5. 13. 원고에게 취득세 86,233,92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7,952,87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3,641,180원(가산세 포함)(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위 과세예고통지서는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다.

2) 피고는 과세예고통지서가 반송되자 2013. 8. 6. 피고에게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징수하기로 결정하고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취득세 등에 관한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다.

연번	고지서 발송일	등기우편물 번호	송달장소	우편물 수령인	비고
1	2013. 8. 12.	G	○○시 I, J호	반송	수취인불명
2	2013. 10. 10.	H		반송	수취인불명
3	2013. 11. 8	-		-	일반우편
4	2013. 12. 11.	-		-	일반우편
5	2014. 1. 15.	-		-	일반우편
6	2014. 2. 14.	-		-	일반우편
7	2014. 3. 17.	-		-	일반우편
8	2014. 4. 14.	-		-	일반우편
9	2014. 5. 19.	-		-	일반우편

다. 피고의 재산세 부과 등

1) 피고는 2013. 9. 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3년도 정기분 재산세 5,794,720원(이하 '2013년도분 재산세'라 한다)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2) 피고는 2014. 9. 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4년도 정기분 재산세 5,715,700원(이하 '2014년도분 재산세'라 한다)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3) 피고는 2014. 9. 11. 원고의 당시 주민등록주소지인 '○○시 ○○구 K, L호'(이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15

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로 2014년도분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2014. 9. 16.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 불명'을 이유로 반송되었다. 이에 피고는 주민등록전산망을 통하여 원고의 주소지를 확인하였으나, 이 사건 주소지와 동일한 것을 확인하였고, 2014. 10. 7. 2014년도분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4) 이후에도 피고는 2014. 10. 10. 이 사건 주소지로 2014년도분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발송하고, 2014. 10. 13.부터 2015. 4. 14.까지 8차례에 걸쳐 이 사건 주소지로, 2015. 5. 14. '◯◯시 M'으로 각 2014년도분 재산세 납(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다.

5) 한편, 피고는 2013년도분 재산세에 관하여 압류를 설정하였다가 2022. 4. 12. 압류를 해지한 바 있고, 2023. 5. 23. 2013년도분 및 2014년도분 재산세(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재산세'라 한다)에 관하여 압류를 설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 5,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과세요건 불성립

원고는 사채업자 측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매수에 원고의 명의를 대여하고,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하여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으라'는 요구를 받고 그에 따라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제공하고 D조합에서 대출신청서류를 작성하였을 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 및 재산세 부과처분은 무효다.

2) 이 사건 취득세 등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부고지서 미송달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15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취득세 등에 관한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하지 아니하였고 이로써 원고로부터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박탈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취득세 등에 관한 납부고지서도 송달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는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3) 이 사건 재산세 납부고지서 미송달

피고가 한 2014년도분 재산세 납부고지서의 공시송달은 위법하여 무효이고, 그 외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재산세에 관한 납부고지서를 송달한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에는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구체적인 판단

1) 과세요건 불성립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인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고(제7조 제1항),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데(같은 조 제2항), 여기서 '사실상의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두39026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지방세법은,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토지 등이고(제105조), 재산세 과세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15

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107조 제1항 본문), 여기에 정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한 여부를 불문하고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2980, 2997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에 따른 신고필증에 기초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 및 재산세를 부과한 점, ② 원고는 2012. 9. 26. D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돈을 차용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그 다음 날인 2012. 9. 27.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잔금지급일은 2012. 9. 26.이다'는 취지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를 한 점, ③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사채업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사채업자 측 요청에 따라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이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으로 자신의 차용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잔금지급일인 2012. 9. 26.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 및 소유하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거나 소유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취득세 등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부고지서 미송달 주장에 관한 판단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15

가) 과세예고통지서 미송달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지방세기본법 제116조 제1항은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예고 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구 지방세기본법 등이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과세처분은 무효이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3] 취지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5. 13. 원고에게 이 사건 취득세 등에 관한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

3)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는 하였으나,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과세처분을 그보다 앞서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킬 뿐만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관계 및 불복절차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 본 판결이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15

자 더 이상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과세예고통지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과세예고통지서의 미송달로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보는 이상 납부고지서 미송달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 지방세기본법(2015. 5. 18. 법률 제13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 제1호에서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관한 같은 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고, 이 사건 취득세 등은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부과한 것으로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기본법 제116조 제2항 제1호는 '같은 법 제7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때 '수시부과'는 세금의 징수 불능 상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과세기간 종료 전이든, 신고기한 도래 전이든 불구하고 납세의무자에게 부여한 과세기간 또는 신고기간이라는 기간이익을 박탈하여 미리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제도로서, 납세자가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15

장기간 휴업이나 폐업 상태에 있어 조세포탈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조세를 포탈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같이 일반적인 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를 하면 조세채권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서 수시부과 사유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예컨대, 구 지방세법에서는 담배소비세(제62조), 개인지방소득세(제87조 제1항),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제103조의9), 재산세(제115조 제2항)에서 수시부과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이에 더하여 내국법인지방소득세(제103조의26)에서 수시부과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경우 담배소비세 등과 달리 구 지방세법에서 별도의 수시부과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달리 지방세관계법에서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나아가 구 지방세징수법 제7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취득세 등에 관하여 수시부과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취득세 등 납부고지서의 송달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3) 이 사건 재산세 납부고지서 미송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는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고,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의 과세처분은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15

2023. 6. 29. 선고 2020두46073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은 납부고지서 등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제2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제3호)에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8. 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는 '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는 주민등록표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다'고, 같은 법 제17조 제1호는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법 제30조제3항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들에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2014년도분 재산세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것은 적법하고, 달리 이 사건 재산세에 관한 각 납부고지서가 부적법하게 송달되어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는 2014. 9. 11. 2014년도분 재산세 부과고지서를 당시 원고의 주민등록주소지인 이 사건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주소, 거소, 영업소 불명'을 이유로 2014. 9. 16. 위 부과고지서가 반송되었고, 피고가 주민등록전산망을 통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15

하여 원고 주소지를 검색하였으나 여전히 이 사건 주소지만이 확인되었으며, 2014년도분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위 반송일로부터 14일 후인 2014. 9. 30.이었다.

② 피고는 위와 같이 2014년도분 재산세 부과고지서가 반송되고 주민등록표상 원고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자 2014. 10. 7. 위 부과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고, 위 공시송달 이후에도 부과고지서 및 납(독촉)고지서를 10회에 걸쳐 이 사건 주소지 또는 2015. 5. 14.경 새로운 원고의 주소지로 확인된 ○○시 M으로 발송하기도 하였다.

③ 비록 서류 등 보존기간의 경과로 2013년도분 재산세 부과고지서의 발송내역에 관한 자료는 폐기되었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2013. 9. 4.경부터 2014. 11. 17.에 이르기까지 부과고지서 등을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고(을 제5호증 제1면상 최종 고지서 발행일이 2014. 11. 17.이다), 2014년도분 재산세 부과고지서 등의 발송내역에 비추어 보면, 2013년도분 재산세 부과고지서 역시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의 주민등록된 주소지로 발송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가 2015. 4. 14.까지는 이 사건 주소지로 2014년도분 재산세 부과고지서를 발송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2014. 11. 17. 무렵 원고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는 여전히 이 사건 주소지였을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는 이 사건 재산세 부과고지서 송달을 전제로 원고에 대한 압류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15

재판장 판사 이○○

판사 김○○

판사 김○○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15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구 지방세기본법(2015. 5. 18. 법률 제13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공시송달)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제30조제3항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73조(납기 전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을 때
2. 강제집행을 받을 때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15

3. 경매가 시작되었을 때
4.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
5.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6.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7.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제116조(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하여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1.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과세예고통지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7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3.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법령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8. 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주소불분명의 확인)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는 주민등록표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다.

제17조(공시송달)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15

1.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법 제30조제3항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받을 사람(법 제30조제3항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